



파이뤼터커 (선전) 고온자재 유한공사 VS 자오용진 등의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47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14) 深中法知民终字 第30号
판결 일자	2014년 01월 24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파이뤼터커(선전) 고온자재 유한공사		
원심피고(피상소인)	1. 자오용진, 2. 선전시 쿠키얼터 방음·소음저감 공정기술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70조, 계약법 제8조, 반부정당 경쟁법 제10조		
영업비밀	고객 자료 및 제품 데이터 분석 자료 관련		
키워드 (Keyword)	상업비밀보호 협의(商业秘密保护协议), 고용계약(聘用合同), 사직협의(离职协议), 증명책임(责任证据), 공증(公证)		

02 사건 개요

파이뤼터커(선전) 고온자재 유한공사(이하 '파이뤼터커 공사')는 도료, 첨가제 및 보조자재 등의 설비 도매, 수수료 대리(경매 제외), 수출입 및 다른 관련 배송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이다. 자오용진은 2010년 3월 파이뤼터커 공사의 방음자재 중국지역 책임의 직책을 맡았으며, 파이뤼터커 공사와 <상업비밀 보호협의>,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2011년 자오용진은 파이뤼터커 공사 재직 중 쿠키얼터 공사를 설립하였고, 2012년 2월 개인사유로 사직하면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포함한 <사직 협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파이뤼터커 공사는 시장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자오용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1) 상업비밀 침해금지, 2) 퇴직과 관련된 장기 서비스금 지급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장기 서비스금 지급의무의 부존재는 인정하였으나, 자오용진과 선전시 쿠키얼터 방음·소음저감 공정기술 유한공사(이하 '쿠키얼터 공사')가 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파이뤼터커 공사가 상소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	원심 피고(피상소인)
자오용진 등이 파이뤄터커 공사의 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자오용진 등이 파이뤄터커 공사의 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
파이뤄터커 공사의 경제적 손실 및 권리침해 조사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파이뤄터커 공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04 판결 요지

상소법원이 본 사건의 '고객자료와 제품에 대한 분석'은 상업비밀에 해당하며, 본 사건은 상업비밀 침해 분쟁에 속한다고는 판단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호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 제공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본 사건에서 파이뤄터커 공사는 자오용진과 쿼이얼터 공사가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05 Key Point

본 판결에서, 상업비밀의 '침해행위' 성립 요건을 ① 상업비밀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피고의 정보와 원고의 정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③ 피고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판시하고 있다. 한국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입증'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상업비밀 침해 소송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증거수집 및 입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서면 증거를 반드시 '공증'을 한 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 판결에서도, 원심 원고 파이뤄터커 공사가 '쿼이얼터 공사가 자신의 타이완 자공사 시공도면을 이용하여 광고 선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원심 법원에서 공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